

2026년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모집주택 : 경동 포레스트힐 행복주택 아미, 금사행복주택,
금호 센트럴베이 행복주택 일광, 더파크 이기대 행복주택,
동래행복주택, 시청 앞 행복주택 2단지)

최초공고일 : 2026. 7.20.(월)



목 차

1. 공급대상주택 및 임대조건	5
2. 공급일정	10
3. 신청방법	11
4.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12
5. 신청서류	22
6. 예비입주자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29
7. 무주택·소득·자산 검증기준	30
8. 유의사항	35
9. 지구 및 단지특성	38
10.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50
11. 주택 편의시설 설치 안내	51
12. 위치 안내	52

2026년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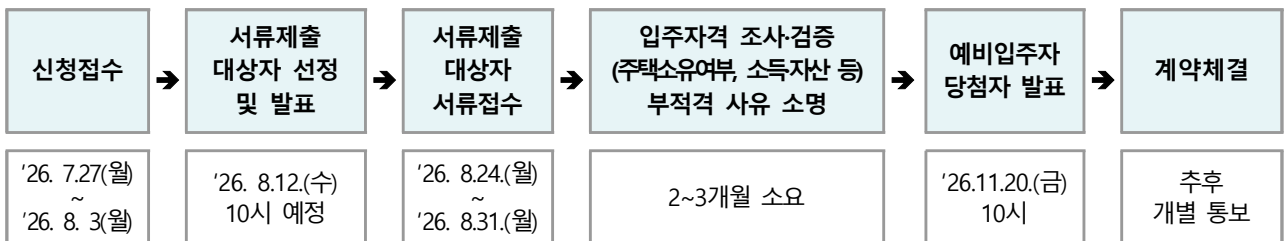
[입주자모집 공고일 : 2026.07.20]

- 본 공고는 최초 모집 이후 예비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공고이므로, 실제 입주까지는 공가발생 및 예비순번에 따라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에 행복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있는 경우, 본 공고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기존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즉시 탈락** 처리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일[2026.07.20.(월)]은 **입주자격(공급계층 및 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자산, 소득 등)의 판단기준일**이 되며,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격을 갖춘 대상에게 공급됩니다.
- 행복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신청은 **온라인접수**(BMC 청약센터, <https://apply.bmc.busan.kr>)로 진행하며,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전자시스템을 통한 신청이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공사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청약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모집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별상황 등에 대한 의사소통 오류로 관련사항 착오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신청과 관련한 상담은 주택신청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 신청 후에는 모든 수정이 불가합니다.
- 입주자모집 공고일(2026.07.2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일부 자격에 한해 무주택자)으로서 입주자격(공고문 p.12~) 및 입주자격별 소득·자산 기준(공고문 p.14~)을 충족한 사람에게 공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의 해당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은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bmc.busan.kr>), BMC청약센터(<https://apply.bmc.busan.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만** 신청가능(단지 중복불가)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각 지구별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은 **신청자의 소득에 따라 산정**되며, 동일 평형임에도 입주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다른 임대조건(공고문 p.6~)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최종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입주사실이 있거나 행복주택에 입주 중인 분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 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동일한 임대주택 유형(통합공공임대, 국민, 영구, 행복) 내에서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 신청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중복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①입주자 모집 공고일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순서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금회 모집공고는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부산도시공사 행복주택에 현재 거주 중인 계약자는 거주 중인 행복주택의 동일한 공급평형에 청약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예시) 동래 행복주택 19A형에 거주 중인 청년계층 계약자는 동래행복주택 19A형 청년계층을 제외하고 청약신청가능
- 임대주택 기 입주자의 경우 계약체결 후 입주 전까지 기존에 입주 중인 임대주택을 해약신청 및 명도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를 받지 못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공급일정



- 주택소유여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 소득 및 자산정보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며, 부산도시공사는 해당 자료의 수치를 근거로 소명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이니 조회된 공적자료의 세부적인 내용은 관할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소득 자산 조회기간, 긴급 보수 등으로 인해 당첨자발표, 계약 및 입주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으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소유로 인정될 수 있으니 세부사항은 공고문 p.30~p.31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행복주택 계약은 신청자 기준으로 체결하고 사망, 이혼 등 불가피한 사유 외에는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행복주택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는 상속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선정 후 실제 입주까지는 공가발생 및 예비순번에 따라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면적 및 지구별 무상옵션 제공사항

주택명	주택형	세대당 계약면적(m ²)					무상옵션 반영여부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가스, 전기쿡탑
경동 포레스트힐 행복주택 아미	29A	29.4166	14.3983	2.3371	19.6998	65.8918	○	X	X	○
	36A	36.7895	17.4467	2.9728	24.6373	81.8463	○	X	X	○
	36A1	36.7895	17.4467	2.9728	24.6373	81.8463	○	X	X	○
	36B	36.7854	17.4196	2.9724	24.6346	81.8120	○	X	X	○
	45A	45.3244	21.0824	3.6625	30.353	100.4223	○	X	X	○
	59A	59.956	27.4365	4.8448	40.1516	132.3889	○	X	X	○
금사 행복주택	36A	36.8169	19.2746	5.0142	23.4381	84.5438	○	X	X	○
	36B	36.9848	18.9394	5.0371	23.5449	84.5062	○	X	X	○
금호 센트럴 베이 행복주택 일광	19	19.5932	9.0860	2.1657	8.0086	38.8535	○	○	○	○
	29A	29.5489	13.1238	3.2661	12.0779	58.0167	○	X	X	○
	29B	29.5489	13.1238	3.2661	12.0779	58.0167	○	X	X	○
	36	36.9256	16.0496	4.0815	15.0931	72.1498	○	○	X	○
	44	44.7638	18.9950	4.9478	18.2969	87.0035	○	X	X	○
	59	59.8049	25.1846	6.6105	24.4449	116.0449	○	X	X	○
더 파크 이기대 행복주택	26A	26.0041	11.9695	3.5084	-	41.482	○	X	○	○
	26A1	26.0041	11.9695	3.5084	-	41.482	○	X	○	○
	26B	26.4111	12.0987	3.5633	-	42.0731	○	X	○	○
	26B1	26.4111	12.0987	3.5633	-	42.0731	○	X	○	○
	44	44.1405	19.5808	5.9555	-	69.6768	○	X	X	○
	44.1	44.1405	19.5808	5.9555	-	69.6768	○	X	X	○
동래 행복주택	19A	19.3078	11.9135	2.0442	5.3316	38.5971	○	X	○	○
	19A1	19.3078	11.7734	2.0442	5.3316	38.4570	○	X	○	○
	29A	29.0646	17.3548	3.0773	8.0259	57.5226	○	X	○	○
	32A	32.5086	19.0013	3.4419	8.9769	63.9287	○	X	X	○
	36C	36.6935	21.4276	3.8850	10.1325	72.1386	○	X	X	○
시청 앞 행복주택 2단지	260A	26.8246	20.1120	2.8237	17.3338	67.0941	○	○	○	○
	260B	26.4136	19.6289	2.7804	17.0682	65.8911	○	○	○	○
	26 ABCD	26.6009	19.4213	5.2565	17.1893	68.4680	○	X	X	○
	36A	36.2246	25.7037	7.1584	23.4079	92.4946	○	X	X	○
	36B	36.2246	25.4830	7.1584	23.4079	92.2739	○	X	X	○
	44A	44.9689	31.7188	8.8864	29.0584	114.6325	○	X	X	○
	44B	44.1886	30.8989	8.7322	28.5542	112.3739	○	X	X	○

- 이번 공고는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추후 공가가 발생하는 경우에 순차적으로 계약 및 입주 가능하며, 일부의 경우에는 당첨자 발표 직후 계약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신청계층에 대한 자세한 입주자격은 4장(p.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지구별 임대조건 및 모집세대수

- 아래의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와 임대보증금 상호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표에 정해진 금액으로 전환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후 상호 전환은 갱신계약 시 가능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갱신계약 시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경동 포레스트힐 행복주택 아미(부산광역시 서구 옥천로 173번길 29)

주택형	건설호수	공급계층	금회 모집세대	기본 임대조건		전환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원)	전환 구분	임대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원)
29A	217	대학생	20	20,120	85,500	최대	26,150	55,300
						최소	14,080	103,100
		청년 (소득無)	8	20,120	85,500	최대	26,150	55,300
		청년 (소득有)		21,310	90,500	최대	27,700	58,500
						최소	14,910	109,100
		고령자	12	22,490	95,500	최대	29,230	61,800
36A	127					최소	15,740	115,100
		대학생	8	24,710	105,000	최대	32,120	67,900
						최소	17,290	126,600
		청년 (소득無)	10	24,710	105,000	최대	32,120	67,900
		청년 (소득有)		26,170	111,200	최대	34,020	71,900
		주거급여 수급자	3	21,810	92,600	최대	28,350	59,900
36A1	24	고령자	2	27,620	117,300	최소	15,260	111,700
						최대	35,900	75,900
36B	51					최소	19,330	141,400
		대학생	10	24,710	105,000	최대	32,120	67,900
						최소	17,290	126,600
		청년 (소득無)	12	24,710	105,000	최대	32,120	67,900
		청년 (소득有)		26,170	111,200	최대	34,020	71,900
						최소	18,310	134,100
45A	34	신혼부부	8	34,840	148,000	최대	35,900	75,900
						최소	19,330	141,400
59A	58	신혼부부	4	45,200	192,100	최대	45,290	95,700
						최소	24,380	178,500
						최대	58,760	124,300
						최소	31,640	231,600

- 금사 행복주택(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로85번길 2)

주택형	건설호수	공급계층	금회 모집세대	기본 임대조건		전환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원)	전환 구분	임대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원)
36A	15	주거급여 수급자	2	29,160	121,500	최대	43,740	48,600
						최소	14,580	164,000
36B	17	청년 (소득無)	4	33,180	138,200	최대	49,770	55,200
		최소				16,590	186,500	
		청년 (소득有)		35,130	146,300	최대	52,690	58,400
						최소	17,560	197,500

- 금호 센트럴베이 행복주택 일광(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해빛1로 61)

주택형	건설호수	공급계층	금회 모집세대	기본 임대조건		전환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원)	전환 구분	임대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원)
19	216	대학생	10	22,330	98,600	최대	33,490	42,700
						최소	11,160	131,100
		청년 (소득無)	84	22,330	98,600	최대	33,490	42,700
						최소	11,160	131,100
		청년 (소득有)		23,650	104,400	최대	35,470	45,200
						최소	11,820	138,800
29A	158	청년 (소득無)	20	33,350	147,200	최대	50,020	63,800
						최소	16,670	195,800
		청년 (소득有)		35,310	155,900	최대	52,960	67,600
						최소	17,650	207,300
		주거급여 수급자	24	29,430	129,900	최대	44,140	56,300
						최소	14,710	172,800
29B	56	고령자	60	37,270	164,600	최대	55,900	71,400
						최소	18,630	218,900
		주거급여 수급자	3	29,430	129,900	최대	44,140	56,300
						최소	14,710	172,800
36	44	청년 (소득無)	14	41,270	182,200	최대	61,900	79,000
						최소	20,630	242,300
		청년 (소득有)		43,700	193,000	최대	65,550	83,700
						최소	21,850	256,700
		고령자	3	46,130	203,700	최대	69,190	88,300
						최소	23,060	270,900
		주거급여 수급자	3	36,420	160,800	최대	54,630	69,700
						최소	18,210	213,900
44	306	청년 (소득無)	54	49,570	218,900	최대	74,350	94,900
						최소	24,780	291,100
		청년 (소득有)		52,480	231,700	최대	78,720	100,500
						최소	26,240	308,200
		신혼부부	14	58,320	257,500	최대	87,480	111,700
						최소	29,160	342,500
		고령자	12	55,400	244,600	최대	83,100	106,100
						최소	27,700	325,300
		주거급여 수급자	3	43,740	193,100	최대	65,610	83,700
						최소	21,870	256,800
59	219	청년 (소득無)	20	64,940	286,800	최대	97,410	124,400
						최소	32,470	381,500
		청년 (소득有)		68,760	303,600	최대	103,140	131,700
						최소	34,380	403,800
		신혼부부	34	76,400	337,400	최대	114,600	146,400
						최소	38,200	448,800
		고령자	12	72,580	320,500	최대	108,870	139,000
						최소	36,290	426,300
		주거급여 수급자	3	57,300	253,000	최대	85,950	109,700
						최소	28,650	336,500

- 더 파크 이기대 행복주택(부산광역시 남구 이기대공원로 18)

주택형	건설호수	공급계층	금회 모집세대	기본 임대조건		전환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원)	전환 구분	임대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원)
26A	6	대학생	3	27,640	117,400	최대	41,460	48,300
						최소	13,820	157,700
26A1	2	고령자	3	30,890	131,200	최대	46,330	53,900
						최소	15,440	176,200
26B	11	청년 (소득無)	3	28,080	119,300	최대	42,120	49,100
						최소	14,040	160,200
		청년 (소득有)		29,730	126,300	최대	44,590	51,900
						최소	14,860	169,600
26B1	1	고령자	3	31,380	133,300	최대	47,070	54,800
						최소	15,690	179,000
44	16	신혼부부	10	53,640	227,900	최대	80,460	93,800
						최소	26,820	306,100

- 동래행복주택(부산광역시 동래구 반송로 164)

주택형	건설호수	공급계층	금회 모집세대	기본 임대조건		전환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원)	전환 구분	임대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원)
19A	41	대학생	26	22,370	93,200	최대	33,350	37,200
		주거급여 수급자	2	19,740	82,200	최소	11,180	125,800
						최대	29,610	32,800
						최소	9,870	110,900
19A1	62	대학생	3	22,370	93,200	최대	33,550	37,200
		청년 (소득無)	6	22,370	93,200	최소	11,180	125,800
						최대	33,550	37,200
						최소	11,180	125,800
						최대	35,520	39,400
		청년 (소득有)	6	23,680	98,600	최소	11,840	133,100
						최대	37,500	41,600
		고령자	2	25,000	104,100	최소	12,500	140,500
		주거급여 수급자	3	19,740	82,200	최대	29,610	32,800
						최소	9,870	110,900
최대	50,020					55,500		
29A	50	대학생	20	33,350	138,900	최소	16,670	187,500
		신혼부부	3	39,240	163,500	최대	58,860	65,400
						최소	19,620	220,700
		고령자	2	37,270	155,200	최대	55,900	62,000
						최소	18,630	209,500
		주거급여 수급자	3	29,430	122,600	최대	44,140	49,000
						최소	14,710	165,500
		32A	12	청년 (소득無)	4	36,580	152,400	최대
최소	18,290			205,700				
청년 (소득有)	4			38,730	161,300	최대	58,090	64,400
						최소	19,360	217,700
신혼부부	2			43,040	179,300	최대	64,560	71,700
						최소	21,520	242,000
36C	16	신혼부부	6	48,600	202,500	최대	72,900	81,000
						최소	24,300	273,300

- 시청 앞 행복주택 2단지(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38번길 40)

주택형	건설호수	공급계층	금회 모집세대	기본 임대조건		전환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원)	전환 구분	임대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원)
26OA	44	대학생	10	36,260	151,000	최대	54,390	60,300
						최소	18,130	203,800
		청년 (소득無)	10	36,260	151,000	최대	54,390	60,300
						최소	18,130	203,800
		청년 (소득有)		38,390	159,900	최대	57,580	63,900
26OB	65					최소	19,190	215,800
		대학생	10	35,580	148,200	최대	53,370	59,200
						최소	17,790	200,000
		청년 (소득無)	15	35,580	148,200	최대	53,370	59,200
						최소	17,790	200,000
26A/B	178	청년 (소득有)		37,680	156,900	최대	56,520	62,700
						최소	18,840	211,800
		대학생	10	36,340	154,400	최대	54,510	63,500
						최소	18,170	207,300
		청년 (소득無)	40	36,340	154,400	최대	54,510	63,500
26C	142					최소	18,170	207,300
		청년 (소득有)		38,480	163,500	최대	57,720	67,300
						최소	19,240	219,600
		청년 (소득無)	25	36,340	154,400	최대	54,510	63,500
						최소	18,170	207,300
26D	90	청년 (소득有)		38,480	163,500	최대	57,720	67,300
						최소	19,240	219,600
		주거급여 수급자	15	32,070	136,200	최대	48,100	56,000
						최소	16,030	182,900
		고령자	15	40,620	172,600	최대	60,930	71,000
36A	406					최소	20,310	231,800
		청년 (소득無)	80	48,550	206,300	최대	72,820	84,900
						최소	24,270	277,100
		청년 (소득有)		51,400	218,400	최대	77,100	89,900
						최소	25,700	293,300
36B	68	신혼부부	30	57,120	242,700	최대	85,680	99,900
						최소	28,560	326,000
		청년 (소득無)	10	48,550	206,300	최대	72,820	84,900
						최소	24,270	277,100
		청년 (소득有)		51,400	218,400	최대	77,100	89,900
44A	35					최소	25,700	293,300
		청년 (소득無)	5	59,090	251,100	최대	88,630	103,300
						최소	29,540	337,200
		청년 (소득有)		62,560	265,800	최대	93,840	109,400
						최소	31,280	357,000
44B	80	신혼부부	4	69,520	295,400	최대	104,280	121,600
						최소	34,760	396,700
		청년 (소득無)	10	58,070	246,700	최대	87,100	101,500
						최소	29,030	331,300
		청년 (소득有)		61,480	261,200	최대	92,220	107,500
						최소	30,740	350,800
		신혼부부	10	68,320	290,300	최대	102,480	119,500
						최소	34,160	389,900
		고령자	10	64,900	275,800	최대	97,350	113,500
						최소	32,450	370,400

신청접수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예비입주자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온라인 및 현장 접수 병행 • 기간 : '26. 7.27.(월) 10:00 ~ '26. 8. 3.(월) 16:00 • 제출서류 : <u>공급신청서</u> , <u>개인정보동의서</u>	모집호수의 2배수 선정 • 발표일 : '26. 8.12.(수) 10시 • 장소 : 공사 홈페이지, BMC청약센터 • 선정방법 : 추첨	온라인 및 현장접수 병행 • 기간 : '26. 8.24.(월) 10:00 ~ '26. 8.31.(월), 16:00 • 제출서류 : <u>모든 신청서류</u>	예비입주자 순위 발표 • 발표일 : '26.11.20.(금) 10시 • 장소 : 공사 홈페이지, BMC청약센터 • 선정방법 : 추첨	추후 개별 통보

※ 현장 접수의 경우, 토·일·공휴일·점심시간(12:00~13:00) 미운영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증 처리기간(2~3개월 소요)에 따라 일정이 연기될 수 있으며, 부적격자 소명을 거친 후 당첨자 발표 예정(연기 시 별도 안내)

◆ 온라인 접수

- 청약방법 : BMC 청약센터(<https://apply.bmc.busan.kr>) → 청약서비스 → 온라인청약 → 청약신청
- 신청기간 : **2026. 7.27.(월) 10:00 ~ 8. 3.(월) 16:00** ※ 온라인 청약신청은 24시간 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간편인증 로그인(카카오톡, 국민은행, 페이코, 통신사패스,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토스,뱅크샐러드 등 인증서)을 이용하여 로그인하실 수 있습니다.

◆ 현장 접수

- 대 상 자 : 온라인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신청자 본인이 방문하여 접수 가능(고령자, 장애인 등)
- 신청기간 : **2026. 7.27.(월) 10:00 ~ 8. 3.(월) 16:00** ※ 토·일·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수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부산도시공사 1층 접수처**
- 제출서류 : 공급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현장 접수 시 시작일과 종료일에 많은 인원이 몰려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호선 부암역 3번 출구에서 100m)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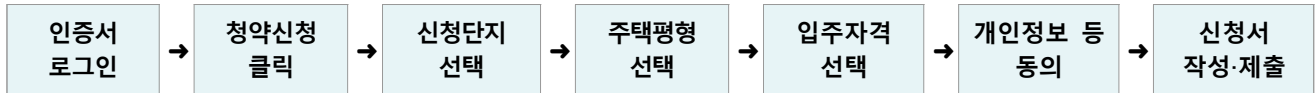
서류제출 대상자는 신청절차 중 첫 번째 추첨을 통해, **모집세대의 2배수**로 선별된 대상자를 말하며, 자격별 서류를 통해 적격여부를 확인 후 두 번째 추첨을 최종 예비입주자를 결정함.

- 대 상 자 :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모집세대의 2배수 내외**로 대상자 선정
- 발 표 일 : **2026. 8.12.(수) 10시**
- 조회방법 :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bmc.busan.kr>), BMC 청약센터(<https://apply.bmc.busan.kr>)
-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기한 내에 모든 제출서류(p.23~)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출기간 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온라인접수(BMC 청약센터, <https://apply.bmc.busan.kr/>)로 진행하며,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전자시스템을 통한 신청이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공사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 BMC 청약센터(<https://apply.bmc.busan.kr/>)

- 온라인으로 청약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개인용 인증서(카카오톡, 국민은행, 페이코, 통신사패스,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토스,뱅크샐러드 등 인증서)를 사전에 발급하신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공급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현장 접수방법 : 부산광역시 부진진구 신천대로 156 부산도시공사, 1층 행복주택 접수처

- 행복주택 접수처 직접 방문하여 공급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지참)
- 현장 접수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 서류

구 분	구비서류
본인이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 (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공통서류 :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인감증명방식 :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인감증명서 상의 도장 날인) ③ 본인서명방식 :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 유의사항

- 신청접수는 온라인접수[BMC 청약센터(<https://apply.bmc.busan.kr/>)] 신청으로 하며,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온라인 접수가 어려우신 분은 접수처에 방문하셔서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접수는 신청자가 신청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착오 또는 허위입력이나 신청내용이 제출한 서류와 상이하면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현장에서 신청하는 경우 신청기간의 첫날에는 장시간 대기 및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지정된 기간 동안에만 가능하며, 수정(취소)도 신청기간 내에만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마감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시스템 장애 등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접수기간 중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자가 입주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세대구성원의 ① 주택소유 여부 ② 소득기준 ③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자모집 공고일(2026. 7.20) 현재 위 자격을 충족하신 분에 한하여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항목에 기재된 자격서류의 발급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격 미숙지 및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소유 여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 소득 및 자산기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며, 부적격 판정 시 소명의 이행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 신청자격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의 자녀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 세대구성원의 범위

세대구성원	비 고
• 신청자	-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대학생, 청년 계층의 주택 소유여부는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주택 소유여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배우자의 자격검증이 불가능한 사람의 경우 신청불가 -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이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 주민등록말소자, 거주불명자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세대구성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나,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②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③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미성년자녀수는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을 인정하며, 재혼 배우자의 이전 혼인 미성년자녀의 경우에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 신청자격별 소득·자산 기준

- 행복주택의 신청자격별 소득·자산 기준은 “4.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의 공급대상별 상세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자산 기준은 가산항목에 따라 일정 비율로 가산되며, 가산항목이 중복시 합산 적용됩니다.

◎ 소득기준 가산 내용

-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공급신청자가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자녀(태아 또는 입양한 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 입주자격별 소득요건에 일정비율을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기준일 : 2023년 3월 28일		가산비율
기준일 이후(당일 포함) 출생 자녀 수(태아포함)	기준일 전 출생 자녀 수(미성년자)	
1명	0명	10%p
1명	1명 이상	20%p
2명 이상	상관없음	20%p

◎ 자산기준 가산 내용

- ①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소득기준 가산 내용과 동일
-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가산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위의 가산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 소득기준을 포함한 자세한 요건은 공고문 4장의 계층별 기준(p.14~)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층 재청약 가능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 자격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8장 유의사항(P.35~) 확인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 동일한 공급유형(통합공공임대, 국민, 행복, 영구)내에서 중복신청도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에 동일한 공급유형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됩니다.
- 중복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①입주자 모집공고일, ②신청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순서로 상실 처리됩니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 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4-1. 대학생 계층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 7.20)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대학생은 ①-㉓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㉓와 ②~④)

①-㉓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①-㉓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② 혼인중이 아닐 것

③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단,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인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비 고
1인	4,576,036원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
2인	6,452,897원 이하	" 의 110%
3인	8,168,429원 이하	" 의 100%
4인	8,802,202원 이하	" 의 100%
5인	9,326,985원 이하	" 의 100%
6인	9,906,263원 이하	" 의 100%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10,8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대학생 계층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자산 기준>>

* 가산 적용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구분	가산항목		최종 소득·자산기준(한도)		
	가구원 수	출생자녀 수 (태아포함)	적용 소득기준	적용 자산기준	
				총 자산가액	자동차가액
대학생	1인	0인	120%	108,000,000원	-
	2인	0인	110%	108,000,000원	-
		1인	120%	119,000,000원	-
	3인	0인	100%	108,000,000원	-
		1인	110%	119,000,000원	-
		2인 이상	120%	130,000,000원	-

※ 출산자녀는 '23. 3.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가산적용 상세 소득기준

가구원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110%	120%
1인	-	-	4,576,036원 이하
2인	-	6,452,897원 이하	7,039,524원 이하
3인	8,168,429원 이하	8,985,272원 이하	9,802,115원 이하
4인	8,802,202원 이하	9,682,422원 이하	10,562,642원 이하
5인	9,326,985원 이하	10,259,684원 이하	11,192,382원 이하
6인	9,906,263원 이하	10,896,889원 이하	11,887,516원 이하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

◆ 유의사항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
- 대학생은 거주지 또는 대학소재지 기준요건을, 취업준비생은 거주지 기준요건을 갖추어야 함
- '대학'은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함.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함.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통신 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시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함
- 대학생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는 다음과 같음

적용 대상	비 고
• 신청자 본인	-
• 신청자의 부모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여, 부, 모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말함
- '다음 학기'란 입주지정기간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함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공고일 현재 합격증명서 등을 통해 입학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순위

순 위	대 상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울산광역시,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이 거주지이거나 재학 중인 대학의 소재지인 자
2순위	경상남도(1순위 지역 제외)가 거주지이거나 재학 중인 대학의 소재지인 자
3순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란 실제 본인이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캠퍼스 소재지를 말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순위에 따라 추첨함

4-2. 청년 계층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 7.20)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과 ②~⑤,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과 ②~⑤)

①-㉠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6. 7. 21. ~ 2007. 7.20.)

①-㉠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1,825일) 이내인 자

-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3)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② 혼인중이 아닐 것

③ 해당 세대(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단,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이하일 것

주택공급신청자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비 고
세대주인 청년 (세대 기준)	1인	4,576,036원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
	2인	6,452,897원 이하	" 의 110%
	3인	8,168,429원 이하	" 의 100%
	4인	8,802,202원 이하	" 의 100%
	5인	9,326,985원 이하	" 의 100%
	6인	9,906,263원 이하	" 의 100%
세대원(본인)	1인	4,576,036원 이하	" 의 120%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25,1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

⑤ 본인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청년 계층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자산 기준>>

* 가산 적용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구분	가산항목		최종 소득·자산기준(한도)		
	가구원 수	출생자녀 수 (태아포함)	적용 소득기준	적용 자산기준	
				총 자산가액	자동차가액
세대주인 청년 (세대기준)	1인	0인	120%	251,000,000원	45,420,000원
	2인	0인	110%	251,000,000원	45,420,000원
		1인	120%	276,000,000원	49,960,000원
	3인	0인	100%	251,000,000원	45,420,000원
		1인	110%	276,000,000원	49,960,000원
		2인 이상	120%	301,000,000원	54,510,000원
세대원 (본인)	1인	0인	120%	251,000,000원	45,420,000원
	2인	0인	110%	251,000,000원	45,420,000원
		1인	120%	276,000,000원	49,960,000원
	3인	0인	100%	251,000,000원	45,420,000원
		1인	110%	276,000,000원	49,960,000원
		2인 이상	120%	301,000,000원	54,510,000원

※ 출산자녀는 '23. 3.28 이후 출산한 자녀(임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가산적용 상세 소득기준

가구원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110%	120%
1인	-	-	4,576,036원 이하
2인	-	6,452,897원 이하	7,039,524원 이하
3인	8,168,429원 이하	8,985,272원 이하	9,802,115원 이하
4인	8,802,202원 이하	9,682,422원 이하	10,562,642원 이하
5인	9,326,985원 이하	10,259,684원 이하	11,192,382원 이하
6인	9,906,263원 이하	10,896,889원 이하	11,887,516원 이하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

◆ 유의사항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의 경우 동일면적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을 적용**
-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 ①-④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함. 단,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①-④ 2)의 퇴직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함
- ①-④ 3)의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 '청년계층'의 해당 세대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적용 대상	비 고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신청자 본인 - 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 신청자가 단독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

■ 순위

순 위	대 상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울산광역시,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에서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근거지인 자
2순위	경상남도(1순위 지역 제외)에서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근거지인 자
3순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소득이 있는 업무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 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 인정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순위에 따라 추첨함

4-3. (예비)신혼부부·한부모 계층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 7.2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신혼부부의 경우 ①-㉠와 ②~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①-㉡와 ③~⑥, 한부모가족은 ①-㉢와 ③~⑤)

①-㉠ (신혼부부) 혼인중인 자

①-㉡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①-㉢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한부모인 자(2019. 7.21.(당일포함) 이후 출생)

② 혼인기간이 7년 이내(2,555일)일 것(전 배우자였던 사람과 재혼하는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 포함)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자

③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단, 가구원 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가구원수	신혼부부		맞벌이 신혼부부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2인	6,452,897원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10%	7,626,151원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3인	8,168,429원 이하	" 의 100%	9,802,115원 이하	" 의 120%
4인	8,802,202원 이하	" 의 100%	10,562,642원 이하	" 의 120%
5인	9,326,985원 이하	" 의 100%	11,192,382원 이하	" 의 120%
6인	9,906,263원 이하	" 의 100%	11,887,516원 이하	" 의 120%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 일 것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자산 기준>>

* 가산 적용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구분	맞벌이 여부	가산항목		최종 소득·자산기준(한도)		
		가구원 수	출생자녀 수 (태아포함)	적용 소득기준	적용 자산기준	
					총 자산가액	자동차가액
한부모가족	X	2인	0인	110%	345,000,000원	45,420,000원
			1인	120%	380,000,000원	49,960,000원
		3인	0인	100%	345,000,000원	45,420,000원
			1인	110%	380,000,000원	49,960,000원
			2인 이상	120%	414,000,000원	54,510,000원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X	2인	0인	110%	345,000,000원	45,420,000원
		3인	0인	100%	345,000,000원	45,420,000원
			1인	110%	380,000,000원	49,960,000원
			2인 이상	120%	414,000,000원	54,510,000원
		4인 이상	0인	100%	345,000,000원	45,420,000원
	O	2인	0인	130%	345,000,000원	45,420,000원
			1인	120%	345,000,000원	45,420,000원
		3인	0인	130%	380,000,000원	49,960,000원
			1인	120%	345,000,000원	45,420,000원
		4인 이상	0인	120%	345,000,000원	45,420,000원
			1인	130%	380,000,000원	49,960,000원
		4인 이상	2인 이상	140%	414,000,000원	54,510,000원

※ 출산자녀는 '23. 3.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가산적용 상세 소득기준

가구원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110%	120%	130%	140%
2인	-	6,452,897원 이하	7,039,524원 이하	7,626,151원 이하	8,212,778원 이하
3인	8,168,429원 이하	8,985,272원 이하	9,802,115원 이하	10,618,958원 이하	11,435,801원 이하
4인	8,802,202원 이하	9,682,422원 이하	10,562,642원 이하	11,442,863원 이하	12,323,083원 이하
5인	9,326,985원 이하	10,259,684원 이하	11,192,382원 이하	12,125,081원 이하	13,057,779원 이하
6인	9,906,263원 이하	10,896,889원 이하	11,887,516원 이하	12,878,142원 이하	13,868,768원 이하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

◆ 유의사항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말함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2명 중 1명을 대표신청자로 지정하여 대표자가 1주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예비신혼부부(본인 및 예비배우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하여 같은 계층 및 다른 계층으로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자격서류 제출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 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해당 세대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적용 대상	비 고
• 신청자 본인	-
•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 신청자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맞벌이부부 여부 판단기준이 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순위

순 위	대 상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울산광역시,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에서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근거지인 자
2순위	경상남도(1순위 지역 제외)에서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근거지인 자
3순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소득이 있는 업무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 인정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순위에 따라 추첨함

4-4. 고령자 계층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 7.2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 (1961. 7.20(당일포함) 이전에 출생한 자)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비 고
1인	4,576,036원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
2인	6,452,897원 이하	" 의 110%
3인	8,168,429원 이하	" 의 100%
4인	8,802,202원 이하	" 의 100%
5인	9,326,985원 이하	" 의 100%
6인	9,906,263원 이하	" 의 100%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

②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34,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

<<고령자 계층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자산 기준>>

* 가산 적용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구분	가산항목		최종 소득·자산기준(한도)		
	가구원 수	출생자녀 수 (태아포함)	적용 소득기준	적용 자산기준	
				총 자산가액	자동차가액
고령자	1인	0인	120%	345,000,000원	45,420,000원
	2인	0인	110%	345,000,000원	45,420,000원
		1인	120%	380,000,000원	49,960,000원
	3인	0인	100%	345,000,000원	45,420,000원
		1인	110%	380,000,000원	49,960,000원
		2인 이상	120%	414,000,000원	54,510,000원

※ 출산자녀는 '23. 3.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가산적용 상세 소득기준

가구원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110%	120%
1인	-	-	4,576,036원 이하
2인	-	6,452,897원 이하	7,039,524원 이하
3인	8,168,429원 이하	8,985,272원 이하	9,802,115원 이하
4인	8,802,202원 이하	9,682,422원 이하	10,562,642원 이하
5인	9,326,985원 이하	10,259,684원 이하	11,192,382원 이하
6인	9,906,263원 이하	10,896,889원 이하	11,887,516원 이하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

- '고령자'의 해당 세대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적용 대상	비 고
• 신청자 본인	-
•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 신청자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주첨

4-5.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 7.2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①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 자격이 있을 것

※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적용 대상	비 고
• 신청자 본인	-
•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 신청자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추첨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2026. 7.20)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대상자는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5-1. [청약신청 시] 제출서류

다음의 서류는 **최초 청약신청 시에 제출하는 서류**로 모든 신청자에 해당됩니다.

◆ 현장 접수 시 본인(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구 분	구비서류
본인이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 (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공통서류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인감증명방식 :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인감증명서 상의 도장 날인) ③ 본인서명방식 :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 청약신청 시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6. 7.27.(월) 10:00 ~ 8. 3.(월) 16:00 ※ 온라인 청약신청은 24시간 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 BMC청약센터(온라인)를 통하여 신청하시는 분은 아래의 서류에 대해 온라인 신청으로 갈음합니다.

제출서류	비고	부수
공급신청서	- 입주자모집 공고의 별지 양식(공급신청서) 작성 제출 -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bmc.busan.kr/) 및 BMC 청약센터(https://apply.bmc.busan.kr) 공고 참고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대상자 :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 - 만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자녀이름 정자로 기재) - 동의방법 : 정보제공 동의서에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한글 정자 서명 또는 날인	1부

5-2. [서류제출 대상자] 제출서류

다음의 서류는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한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통 제출서류

- **제출기간** : 2026. 8.24.(월) 10:00 ~ 8.31.(월) 16:00 ※ 온라인 제출은 24시간 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온라인 제출) BMC 청약센터 (<https://apply.bmc.busan.kr/>) → 청약서비스 → 온라인청약 → 서류제출대상조회/서류제출
(현장 제출) 부산도시공사 1층 접수처 ※ 토·일·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서류제출대상자는 **2026. 8.12.(수) 10시 이후**에 발표되며, 서류제출 기간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기한 내에 미제출할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방문 접수 시 인파가 몰려 안전사고가 우려될 경우 현장상황에 따라 당일 접수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 방문 접수 시 접수 시작일과 종료일에 많은 인원이 몰리므로 현장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방문 접수 시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확인사항	발급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과 부·모에 한하여 작성 (단, 월평균소득 기준적용을 위한 가구원에 산정되는 추가 세대구성원이 있을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에만 추가 및 세대구성원으로서 서명하며,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에는 추가하지 않음) ※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작성 제외 ※ 만14세 미만의 사람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자녀이름 정자로 기재) - 작성방법 :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한글 정자 서명 또는 날인 - 온라인 제출하는 경우, 별도 양식의 출력 없이 전자서명으로 대체함	공고문 양식 작성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 모든 정보가 표시되도록 전체 발급으로 선택하여 발급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배우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행정복지 센터 (온라인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 모든 정보가 표시되도록 전체 발급으로 선택하여 발급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표시하여 상세증명서로 선택하여 발급 -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외국인 세대원의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외국인 세대원이 명기된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중 1가지 서류 추가제출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사본 (해당자만 제출)	청년, 신혼부부 계층으로 공급 신청할 경우	해당 은행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 외국인청 · 관할 시·구청
임신진단서 (해당자만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신혼부부,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의 자격으로 주택을 신청하는 신청자 중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태아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 받으려는 경우	의료기관 발급
입양관계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입양자녀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받으려는 경우	관할 시·구청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공급대상		확인사항	발급처
대 학 생	대학생	- 재학증명서 - 다음 학기에 입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 다음 학기에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및 각서(공사양식) 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해당 대학
		졸업유예자의 경우 졸업유예증명서	해당 학교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해당 학교
	해당자만 제출	-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확인) - 신청자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초본(동일 거주지 확인)	행정복지 센터
청 년	청년 (만19세이상 ~ 만39세이하)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는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 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가입 내역서 추가 제출	국민연금 공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 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건강 보험공단

청 년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는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 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가입 내역서 추가 제출	국민연금 공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 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건강 보험공단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구직급여 수급자] 퇴직 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1년 이내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수급 자격 인정명세서	지방고용 노동청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는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국민연금 공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 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건강 보험공단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자의 경우 : 예술활동증명서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는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국민연금 공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 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건강 보험공단
	해당자만 제출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 '임의(계속)가입', '미가입자', '지역가입자'인 경우	해당직장 (해당 세무서)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인 경우 : 국세청 발급의 사업자등록증명 제출 - 그 외 :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국세청 해당직장 (해당 세무서)
		- 소득있는 업무 종사기간이 총 5년을 경과한 자 중 -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제외가 필요한 사람 :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 증명서(최종학력 서류로 제출)	해당학교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 제외가 필요한 경우 : 복무확인서(복무중인 경우) 또는 병적증명서(복무완료인 경우)	병무청
		- 소득이 있는 업무 근거지가 일반공급 순위에 해당하여 해당 소재지 기준으로 신청한 경우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제출이 어려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등 대체 * 위의 해당하는 자 중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인 경우 : 국세청 발급의 사업자등록증명 제출 - 그 외 :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와 실제 업무 근거지가 다른 경우 - 실제 업무 근거지가 표시된 재직(퇴직)증명서 추가 제출	해당직장 국세청 해당직장 (해당 세무서)
		<입주 시 제출>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 시 관리사무소에 청약통장(본인) 사본 제출(미제출시 입주불가, 당첨취소 및 계약해지 처리)	해당은행

신 혼 부 부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혼인관계증명서(※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행정복지센터
	예비 신혼부부	•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공사양식)	
		•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확인서(공사양식)	
		• 위임장(대표신청자에게 위임, 위임자 : 예비배우자 / 수임자 : 대표신청자) •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확인서와 위임장 상의 서명방식에 맞게 제출 - 인감날인 시 :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 각각의 본인발급분 인감증명서 - 자필서명 시 :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 각각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감 및 자필서명은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해야 함	
		• 당사자 2인(신청자, 예비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로 발급 - 미혼인 경우에도 발급가능하며 혼인 합산기간 확인을 위해서 제출 필요	행정복지센터
		• 당사자 2인(신청자와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입주 시 제출> • 혼인 후 대표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및 계약이 무효 처리됨	행정복지센터	
해당자	•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업무 근거지가 일반공급 1·2·3순위에 해당하여 해당 소재지 기준으로 신청한 경우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이력으로 발급)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제출이 어려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고유번호증 등 대체 ※ 위의 해당하는 자 중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상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인 경우 : 국세청 발급의 사업자등록증명 제출 - 그 외 :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사여소득지급명세서 등) ※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와 실제 업무 근거지가 다른 경우 - 실제 업무 근거지가 표시된 재직(퇴직)증명서 추가 제출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 국세청 해당직장 (해당 세무서)	
	<입주 시 제출>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 시 관리사무소에 청약통장(본인 또는 배우자) 사본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및 계약이 무효 처리됨	해당 은행	
주거급여수급자		• (필수 제출)주거급여 수급자증명서	행정복지센터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의 추가 제출서류

제출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경우	■ (자녀 관련) 추가서류 없음	-
출생신고 전인 경우	■ 출생증명서	해당 의료기관
임신 중인 경우	■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임신확인서, 임신사실확인서 등 임신진단서 외의 서류는 인정불가	해당 의료기관
입양의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행정복지센터

- 태아 또는 입양한 자녀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인정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입주하기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모자보건법」제14조를 위반하여 인공 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 또는 파양한 사실이 판명된 경우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출생의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출생증명서 등 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 입양의 경우 : 입주기간이 시작된 이후 발급받은 입양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 임신상태가 입주기간이 시작된 이후까지 지속되는 경우 : 입주기간이 시작된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기타사항

■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 BMC 청약센터 (<https://apply.bmc.busan.kr/>) → 청약서비스 → 온라인청약 → 서류제출대상조회/서류제출
(현장 제출) 부산도시공사 1층 접수처

- 인터넷 서류접수는 서류제출대상자가 공사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PC)을 통해 BMC 청약센터 로그인 후 파일을 업로드하여 해당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 **접수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제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마감시간 전에 미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가능 파일은 서류를 **스캐너로 스캔**하거나 **모바일(스마트폰 등) 사진 촬영하여 생성한 파일**, “정부24”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PDF 파일로 저장하여 발급받은 파일**(행정서류 권장방식)에 한합니다.
- 사진촬영 업로드시 식별이 불가하여 재접수를 요하는 경우가 있으니 가급적 스캔파일 접수를 권장 드립니다.
- 서류 스캔 또는 사진 촬영시 **원본서류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서류사본 스캔, 인쇄 미리보기 화면 캡처, PC모니터 화면 촬영 등)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 서류가 접히거나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스캔 또는 사진 촬영 후, 누락되는 장이 없도록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나의 서류가 여러 장인 경우 한 장씩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여러 장의 파일을 각각 제출하거나, 한 개의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병합 제출 권장**)
- 모바일(스마트폰) 사진 촬영 시 프레임 안에 종이 면 전체가 잘리지 않고 모두 들어오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초점을 잘 맞추어 모든 글자가 육안으로 선명하게 보이도록 촬영하여야 합니다.
- 접수된 파일은 인쇄하였을 때 서류 원본과 동일한 내용과 형태를 갖추고 식별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파일형식은 4종(PDF, JPG, JPEG, GIF)에 한하며,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은 3MB로 제한합니다.
- **부적합한 서류가 접수된 경우 적합한 서류로 재접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서류제출 시 원본 서류는 제출받지 않습니다. 다만, 파일 식별불가 및 원본확인필요 등의 사유로 담당자가 서류 원본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 온라인 청약은 신청자가 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 청약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상이하거나 허위 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의 신청자격, 세대구성원, 입주자 요건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 기재사항 누락, 오기재시 신청서류가 접수되지 않으며 별도 연락을 드리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중에는 제출내용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 발표일 : 2026.11.20.(금) 10시 이후
- 당첨확인 :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www.bmc.busan.kr), BMC 청약센터(<https://apply.bmc.busan.kr>)
- 당첨자 발표 일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일정 등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공사 홈페이지에 별도로 게시됩니다.
- 당첨자 발표 시 이번 공고를 통해 선정된 예비입주자 순번이 발표되며, 최종 예비입주자 전체 순번은 해당 평형에 기존 공고에서 선정된 예비입주자가 있을 경우 그들의 순번에 이어 배정됩니다.
- 당첨자 발표 시 기존의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자 발표 직후 계약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추후 계약하지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의 인적사항(개명) 및 주소, 연락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로 발표되었더라도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능합니다.

계약체결은 추후 주택의 공가가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예비입주자 선정 후 실제 입주까지는 공가발생 및 예비순번에 따라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동호배정

- 주택의 동호는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신청형별로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무작위 전산 추첨합니다.
- 동호추첨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층에 배정될 수 있으며, 공동주택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층간소음이나 저층/고층 배정 등의 사유로 동호를 변경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 전자계약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 ※ 상세절차는 개별안내 예정
-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하는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통합공공임대)의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 현장계약

-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전자계약이 어려운 분에 한하여 방문하시어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부산도시공사 1층 계약접수처 ※ 세부일정 및 장소는 개별안내 예정
- 당첨자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공통서류	대리인 방문 시 추가서류
① 계약금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이 가능한 통장 등 ② 계약자의 도장(본인 방문 시 서명가능) ③ 계약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④ 계약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동의서(공사 서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대리인이 계약자의 배우자인 경우 - 공통서류 외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 입증서류 • 대리인이 계약자의 배우자가 아닌 경우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 (본인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

※ 계약금을 납부했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이 취소되며 납부하신 계약금은 환불처리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자동차·자산(금융자산 포함) 초과 및 주택소유로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소명이 완료되어야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주택소유 여부 기준

■ 확인방법

-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부산도시공사)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⑪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 자산가액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총 자산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금융 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펀드, 선물옵션 등 : 최종 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예수금 : 잔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 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준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준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자산 항목 설명	자료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1)산재보험, (2)고용보험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 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 국세청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내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 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종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 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 대상자명예대상, 보훈처 보훈대상자 보상급여 등
	기타 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지방세정 자료

총 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 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약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 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금융정보 조회결과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직권조사 등록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관련항목	유의사항								
최대 거주기간 및 재청약에 관한 기준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입주자격</th><th>최대 거주기간</th></tr> </thead> <tbody> <tr> <td>대학생, 청년 계층</td><td>10년</td></tr> <tr> <td>신혼부부 계층(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포함)</td><td>무자녀(10년), 자녀 1명 이상(14년)</td></tr> <tr> <td>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td><td>20년</td></tr> </tbody> </table> - 최대 거주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연장된 거주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도 해당)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임차인의 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계속 재계약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거주 가능)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재청약 기준 -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거주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대학생 등(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근속자,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4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계층	10년	신혼부부 계층(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포함)	무자녀(10년), 자녀 1명 이상(14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계층	10년								
신혼부부 계층(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포함)	무자녀(10년), 자녀 1명 이상(14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갱신계약 등	■ 갱신계약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기간 중 주택 및 분양권의 소유 시 즉시 퇴거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다만 아래의 경우는 제외 -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사람으로서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청년계층의 경우 만 19세이상 39세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의 나이가 6세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의 요건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제외사항 없이 확인함 ■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동호변경 불가) -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정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table><tr><th rowspan="2">소득기준 초과 비율</th><th colspan="2">할증비율</th></tr><tr><th>최초 갱신계약 시</th><th>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th></tr><tr><td>10%p 이하</td><td>110%</td><td>120%</td></tr><tr><td>10%p 초과 30%p 이하</td><td>120%</td><td>130%</td></tr><tr><td>30%p 초과</td><td>130%</td><td>140%</td></tr></table> •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계층'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산요건을 초과하면 공급대상자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130%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단, 자산요건 중 자동차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 두 개 이상의 항목에서 할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할증비율만 적용됩니다.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p 이하	110%	120%	10%p 초과 30%p 이하	120%	130%	30%p 초과	130%	140%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p 이하	110%	120%													
10%p 초과 30%p 이하	120%	130%													
30%p 초과	130%	140%													
중복입주 금지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 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임대인(부산도시공사)에게 명도 하여야 합니다. • 행복주택의 계약자 또는 계약자의 배우자가 현재 타 임대주택에 계약자로 거주하고 있을 시 기존의 임대주택 명도 후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있으며, 동 주택은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 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미통보 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한 계약금에서 위약금 공제 후 환불)														
신청 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모집공고일(2026. 7.20.)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일부 대학생 및 청년계층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 소득, 자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자료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확정되고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릅니다. •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자산,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2026. 7.20.)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해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마감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 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 예비입주자로 선정 후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계층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실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대기자 명부에서는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로 계약안내를 받은 경우 생업 등의 사유로 1회에 한하여 입주유예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예비입주자의 입주순서는 선정된 당시 입주대기자 명부에서의 잔여 예비입주자 중 마지막 순서가 됩니다. 단,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기존 주택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예비자가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 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타사항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사람은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임신진단서, 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모자보건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합니다. 또한, 공급신청 시 입양한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주 기간동안 입양이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시 공급계약을 취소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 시 잔금 납부, 이사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교부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BNK부산은행, NH Bank, 신한은행 등)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법 제7조 제4항에 의거 입주민의 주거급여 임대료분을 임대인(부산도시공사)이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으로 신청하지 않은 주거급여수급자도 해당)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도배, 도장, 가구, 타일, 위생기구공사 등에 대해서는 입주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함)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

구 분	특 성
경동 포레스트힐 행복주택 아미	• 동·호수에 따라 평면이 좌우 대칭되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고려사항으로 사전 고지된 내용이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전에 당해 지구(또는 단지)를 반드시 방문하여 소음·환경저해 등 단지 및 주변 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주변 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조감도, 단위세대 평면도, 마감재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계실, 비상발전기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정화조의 환기를 위한 급·배기용 환기팬 또는 환기탑(DRY AREA), 배관 등이 일부 동주변과 옥상에 설치되어 소음, 냄새 및 비상발전기 운전 시 발생하는 매연 등에 의해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가로등, 자전거보관소, 쓰레기보관소 등이 주변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되어 있어 이로 인한 냄새, 미관저해, 소음, 불빛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동 옥상 출입문에는 비상개폐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평상시에는 폐쇄되어 있으나 화재 시 자동으로 개방됩니다. • 방범용 CCTV는 주차장, 1층 승강기 홀, 승강기 내부, 1층 계단실, 쓰레기보관소, 단지출입구, 어린이놀이터, 1층 공동현관 주출입구, 옥상출입구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단지 내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행복쉼터, 산책로, 관리사무소 및 주민 공동시설 보행로, 소방도로, 보행가로변 등에 인접한 세대는 사생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의 경우 주통행도로, 인근산책로, 부대시설이용 등으로 인하여 차량전조등, 보안등, CCTV 및 소음 등으로 인한 사생활권 및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주차장 입구에 설치되는 차량출차 주의등과 주차장내 경보등에 인접한 일부 동은 경보음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호수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비상발전기, 각종기계, 환기, 공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별 배치에 따라 같은 방향이라도 층에 따라 일조량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해당동의 저층부 일부 세대는 공용 재산인 조경용 수목으로 인한 조망권, 일조권 침해 및 가로등 설치로 인한 세대내부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부분 계단실 등 하절기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비난방 구역이므로 발코니에 설치된 개별 보일러, 수전류, 배수관, 트랩(Trap) 등이 겨울철에는 동결 또는 동파 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입주 시 구조체가 축열되어 있지 않고 공사세대 등으로 인한 열손실로 난방효과가 적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공동생활 건축물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퇴거 시 세대 전용부분 시설물의 파손·고장 등을 원상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계약 전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세대의 경우 단지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사짐 운반 시 승강기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저층세대의 경우 차로, 보행로 및 인근산책로, 기타 부대시설 등에서 실내가 투시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외부에 설치되는 실외기로 인하여 주변 동에 소음이 전달될 수 있으며, 미관 저해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도시가스(LNG)가 공급되며, 가스용도는 난방용 입니다. • 발코니에 상부세대 배수배관이 시공되어 배수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은 주차장, 관리사무소, 승강기, 경비실, 지하저수조,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방재실, MDF 실,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 쓰레기 수거시설, 자전거보관소 등이 있습니다. • 단지 내 복리시설은 주민운동시설, 커뮤니티시설,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행복쉼터 등이 있습니다.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통로구간 2.3m, 주차구간 2.1m 입니다. • 계약 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인하여 입주 후 중량물 거치 시 낙하의 우려가 있으므로 필히 벽체구조를 확인하여 견고한 방법으로 고정하시기 바라며, 특히 벽걸이 TV 설치 시에는 전문업체가 설치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계약면적 외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혹한기 시설물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 각종 배관에 설치된 열선으로 인하여 겨울철 공용전기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옥외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세대 내부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거실 및 침실 내부로 물넘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입니다.
- 해당 지역부근에 분류식 오수관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아파트 및 상가의 정화조 설치로 인해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실외기 시공으로 인한 소음 및 열교환을 통한 발코니 실내온도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내 경량칸막이는 화재시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화재시 즉시 대피가 가능하도록 어떠한 적재물도 없이 유지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는 단위세대 평면계획에 따라 타입별로 설치위치와 디자인 및 내부 수납기능이 상이하며, 싱크대 하부장과 레인지후드 상부장은 각종 장비로 공간이 협소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제품 일체)은 제품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신청 및 입주 전 설치 가능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설치불가에 따른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 보일러 및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여유 공간이 부족하므로 세탁기 등의 설치 가능 용량 및 간섭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가구(주방가구, 붙박이장, 신발장 등) 설치 부위의 벽체 및 바닥에는 시공 선후관계상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에 빨래건조대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자가 개별 설치 시 천장에 각종 매립배관이 위치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향후 미거주시 원상태로 복원하여야 합니다.
-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사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 자연 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 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곰팡이 발생 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와 침실사이 벽체는 내력벽이므로 벽체철거 및 추가 확장공사는 관련법에 의거 불가합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못한 인근에 위치한 도로나 유희 및 혐오시설 등으로 인한 소음, 악취, 분진 등의 불편 사항이 입주 후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주변 여건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세대는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은 추가 설치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금사
행복주택**

- 금정구 공유재산(구유지) 상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공동주택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주차장)이 복합으로 조성된 단지입니다.
- 부산도시공사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 소유자인 금정구로부터 50년간 사용허가를 받았으며, 본 주택단지 사용검사 후 소유권을 달리 하는 각 시설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공동주택(바닥면적 4,070㎡)	도시계획시설(바닥면적 4,126㎡)	
		공공청사(2,474㎡)	주차장(1,652㎡)
용도	행복주택 4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지하2층~지상7층)	공공업무시설 (지하1~2층, 지상1~2층)	공영주차장 (지하1층)
소유자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 금정구	

- 공공업무시설은 행복복지센터, 주민커뮤니티센터(작은도서관, 아침을여는카페, 공동육아나눔터, 공감원스톱센터, 부산하우징랩, 체력단련실 등)로 운영 중이며, 수요 변화 등에 따라 일부 운영시설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의거 단지 안에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 복지, 보육, 문화, 체육, 가족지원 및 창업지원 등의 공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지역편의시설·공간을 설치하여 지자체 등 운영기관에 무상으로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 단지 내 소유권을 달리 하는 각 시설(공동주택, 공공업무시설, 공영주차장)의 전유부분에 대한 수선·유지 및 보수는 각 소유자가(단, 임차인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사항은 임차인 또는 사용인이) 부담합니다.

- 단지 내 공용부분과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수선유지비 및 화재보험료, 관리비용 등은 각 시설(공동주택, 공공업무시설, 공영주차장)의 소유자가(단, 임차인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사항은 임차인 또는 사용인이) 공유지분에 따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 공동주택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지붕은 평지붕과 경사지붕이 혼합 시공되어 있습니다.
- 공동생활 건축물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권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 인접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조명, 소음 및 매연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비상발전기, 각종기계, 환기, 공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공용부분(승강기 홀, 계단실, 복도 등)의 평면형태 및 마감자재는 동별·층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의 출입구는 101동 작은도서관 옆에 위치해 있으며, 1개소가 설치됩니다.
-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은 25대(경차 3대 포함)로 지하2층에 위치하며, 단지 배치상 동별로 주차대수가 균등하게 배정되지 않습니다.
- 지하2층의 총주차대수는 39대(공동주택용 25대, 공공업무시설용 14대)로, 공동주택과 공공업무시설의 주차공간이 별도 구획되어 있습니다.
- 공동주택(행복주택)의 주차대수는 25대(자주식, 지하식)이며, 공급대상별 산정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신혼부부(10세대)	청년(24세대)	수급자(4세대), 고령자(4세대)
주차대수	10대	12대	3대

- 방법용 CCTV는 지하주차장, 승강기 내부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단지 내 공공업무시설(행정복지센터, 주민커뮤니티센터), 공영주차장,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및 주민공동시설 보행로, 보행가로변, 휴게공간, 공동주택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야외 시설물과 인접한 부분은 일부 보행자 동선과 중첩될 수 있으며, 이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의 경우 주통행도로, 공공업무시설(행정복지센터, 주민커뮤니티센터), 공영주차장, 인근산책로, 부대시설 이용 등으로 인하여 차량전조등, 보안등, CCTV 및 소음 등으로 인한 사생활권 및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주차장 입구에 설치되는 차량출차 주의등과 장내 경보 등에 인접한 일부 동은 경보음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공공업무시설,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부대시설 등의 외부에 설치되는 실외기로 인하여 주변 세대에 소음이 전달될 수 있으며, 미관 저해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저층세대의 경우 보행로, 산책로, 기타 부대시설 등에서 실내가 투시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102동 지상2층의 주민공동시설에는 주방가구, 도배·장판을 제외한 내부시설물은 설치되지 않으며, 주민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경비실 겸용)는 102동 지상2층 공동주택 출입구에 인접하여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배수 및 환기시설이 있으나 기후여건에 따라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지하주차장 배수트렌치의 시공허용 오차로 인해 일부구간에서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주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 지하부분 계단실 및 승강기 홀 등은 기후여건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실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탑, 채광창)이 노출되어 있으며, 펌프실, 발전기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등의 환기를 위한 급·배기용 환기탑(DRY AREA)이 지상 차량출입구 인근 및 일부 동 주변에 설치되어 소음, 냄새 및 비상발전기 운전 시 발생하는 매연 등에 의해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북동측 지상1층(101동 인접)에 생활폐기물보관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냄새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외부 표고차이나 주변 건물로 인해 일부 세대의 경우 조망 등 기타 생활환경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세대별로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필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별 배치에 따라 같은 방향이라도 층에 따라 일조량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동의 저층부 일부 세대는 공용재산인 조경용 수목으로 인한 조망권, 일조권 침해 및 가로등 설치로 인한 세대내부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 옥상에는 태양광 발전설비 관련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무인택배보관함과 자전거보관소는 101동은 지상1층에, 102동은 지상2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단지 내 북측(102동 인접)에 도시가스정압실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설치위치를 필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는 도시가스(LNG)가 공급되며, 가스용도는 난방·취사용입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은 주차장, 관리사무소, 승강기, 자전거보관소, 지하저수조, 펌프실, 전기실, 발전기실, 방재실, MDF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완속),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등이 있습니다.
- 단지 내 가스공급을 위한 지상 정압기실 설치에 따른 미관 저해 및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기분전함 및 통신단자함은 신발장 맞은편 또는 침실 벽면에 설치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미관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복리시설은 주민공동시설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는 위치별로 상이하며 주차바닥면으로부터 최저 2.4미터 이상입니다.
- 본 단지의 마감재 일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 해당품목 : 주방가구(싱크대), 창호류(합성수지제창, 알루미늄제창), 승강기, CCTV, 조명기구 등
- 동·호수에 따라 평면도의 평면이 좌우 대칭되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가구(주방가구, 붙박이장, 신발장 등) 설치 부위의 벽체 및 바닥에는 시공 선·후 관계상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현관, 발코니, 욕실 등 바닥의 단차부위는 시공과정상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PD 점검구는 욕실천장 및 가구류 내부 또는 PD 인접실 등에 설치되며 설치위치 및 형태에 따라 마감 노출로 인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벽체 일부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인하여 입주 후 중량물 거치 시 낙하의 우려가 있으므로 필히 벽체구조를 확인하여 견고한 방법으로 고정하시기 바라며, 특히 벽걸이 TV 설치 시에는 전문업체가 설치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내 목재문, 가구 등의 마감시트는 자재특성상 색감 및 문양이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내 목재 문틀, 아트월, 몰딩, 걸레받이, 시트마감 등에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이며 이는 하자 사항이 아닙니다.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는 단위세대 평면계획에 따라 주택형별로 설치위치와 디자인 및 내부 수납기능이 상이하며, 주방가구 싱크대 하부장 내부 및 레인지후드 상부장 내부는 각종 장비로 인하여 공간이 협소합니다.
- 입주자가 사용중 또는 사용계획인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제품 일체)의 용량이나 규격에 따라 세대 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청약 및 입주 전에 설치 가능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설치불가에 따른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슴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 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 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곰팡이 발생 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36형 발코니는 단위세대 평면계획에 따라 에어컨 실외기실이 설치되고 세탁기 설치공간으로 사용되므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하며, 미관 저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실내·외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한 결로 또는 결빙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내 비상탈출용 경량칸막이 또는 하향식 피난구는 화재 등의 경우에 옆 세대 또는 아래층 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므로, 비상시 사용가능하도록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 상부세대 배수배관이 시공되어 배수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비난방 구역이므로 발코니에 설치된 개별 보일러, 수전류, 배수관, 트랩(Trap) 등이 겨울철에 동결 또는 동파 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입주 시 구조체가 축열되어 있지 않고 공가세대 등으로 인한 열손실로 난방효과가 적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혹한기 시설물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 각종 배관에 설치된 열선으로 인하여 겨울철 공용전기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옥외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주 후 세대 내 환기가 부족할 경우 실내·외 온도차이 및 습기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결로에 의한 곰팡이 발생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야 하며, 특히 입주 후 첫째 겨울은 환기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 욕실에 샤워기나 다량의 온수 사용 시 환기를 하여야 하며, 욕실 환기 부족, 침실·거실·주방에 과도한 가슴기

	사용이나 음식물 조리, 다량의 화분(실내 또는 발코니) 등은 결로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이러한 실내 환경을 자제하시고 환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열공사 외 환기 부족, 사용상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로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세대 내부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거실이나 침실 내부 등으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입니다. • 단지 내 조경시설과 수목은 입체적이고 조화로운 단지조성을 위하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결과 등에 따라 포장 및 조경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승강기에 인접한 세대의 경우 승강기 운행으로 인한 소음·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최상층 근접 세대의 경우 승강기 기계작동에 의한 소음·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복도에 선홍통 우수배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가 현관문 주위에 있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 복도, 침실 등의 벽체마감(마감두께 등)으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줄어 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와 침실·거실 간의 벽체가 내력벽인 경우 벽체철거 및 추가 확장공사는 관련법에 의거 불가합니다. • 청약 및 계약 전에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시설 현황,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 변경, 현장여건 변경,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방범이나 안전상 사유로 대지경계 상에 펜스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보도통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인접 경계부와 외부공간(보도) 간 레벨차이로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고려사항으로 사전 고지된 내용에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전에 해당 단지(또는 지구)를 반드시 방문하여 소음·환경저해 등 단지 및 주변 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주변 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설계, 동별설계, 세대내부설계, 외부 및 내부의 시설물, 자재 및 형태 등이 인허가 관청의 명령, 자재의 품질, 자재가격의 비정상적 급등, 갑작스런 관련법규 변경 등에 의해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의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 현관 앞 공용부분은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를 변경할 수 없으며, 불법행위(전실 설치 등) 시 관계 법령에 의거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미확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은 계약자의 귀책사유입니다. • 조감도, 단지배치도, 단위세대 평면도, 이미지 컷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쇄·편집과정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에 게재한 평면도 등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시 제작된 것으로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조경, 저층부 외벽마감, 동현관 출입구, 건축 및 토목용벽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재질·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조경(수목의 수종·규격·배식, 시설물, 포장 등) 및 세부식재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계약면적 외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용이하지 않는 세대는 이삿짐 운반 시 승강기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는 세대 각 실 및 발코니 외측에 설치된 창호에 무리한 힘을 가하거나 전압·전출 이사 시 이삿짐 장비가 직접적으로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가급적 이삿짐 등은 해당 동 승강기를 이용하여야 하며(이사 중 파손 시 원상복구), 불가피하게 창호설치구간을 이용할 경우에는 필히 창호에 보강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퇴거 시 세대 전용부분 시설물의 파손·멸실·고장 등을 원상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세대는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은 추가 설치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금호 센트렐베이 행복주택 일광	• 아파트는 지하1층~지상25층 규모로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입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조명, 소음 및 매연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단지 내 보행자로 인한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주차장은 800세대[지상주차243대(상가5대, 경차22대포함), 지하주차 557대(경차 55대포함)]이며, 단지

배치상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 않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과 인접한 부분은 일부 보행자 동선과 중첩될 수 있으며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경비실은 주출입구에 1개소, 경비초소는 702동 앞 어린이놀이터 및 706동 앞 어린이놀이터에 위치합니다.
- 단지내 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동별·라인별로 진입이 불가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지하주차장은 배수 및 환기시설이 있으나 기후여건에 따라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지하 주차장 배수트렌치는 구배가 없으며 시공허용 오차로 인해 일부구간에서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환기탑이 설치되는 일부 동의 경우 근접설치로 인해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하거나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지 내 조경 식재(수종 및 배식) 및 시설물(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등)과 관련된 사항은 팜플릿 등의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 공동이 사용하는 야외 시설물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의 영향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에 인접한 라인은 소음 발생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 표고차이 및 주변 건물로 인해 일부 세대의 경우 조망 등 기타 생활환경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세대별로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필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실, 발전기실에 인접한 동은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한 소음, 진동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전기실 및 발전기실 DA는 보도 및 녹지에 인접하여 있습니다.
- 승강장(엘리베이터 홀)에 설치된 창은 알루미늄 고정창으로 환기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옥상에는 TV공청안테나가 설치됩니다.
- 자전거 보관소는 동별로 설치되지 않고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수량 산정 후 설치되어 있습니다.
- 행복주택단지가 동해선(복선전철)과 도로에 인접해 있어 철도소음 및 차량소음 등이 상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본 단지의 일부마감재는 중소기업제품으로 시공되었습니다.

※ 해당품목 : 일반가구(신발장, 반침장), 주방가구(싱크대), 창호류(AL창호, 합성수지제창, 합성수지제문, 목제문), 도·자기질 타일, 석재, 조명기구, CCTV, 승강기 등

- 세대 내 가구(주방가구, 붙박이장, 신발장 등) 설치 부위의 벽체 및 바닥에는 시공 선후관계상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현관, 발코니, 욕실 등 바닥 단차부위는 시공과정상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PD점검구는 욕실천장 및 가구류 내부 또는 PD 인접실 등에 설치되며 설치위치 및 형태에 따라 마감 노출로 인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 세대통합관리반(분전함 및 통신단자함)은 신발장(안쪽) 또는 거실 벽면에 설치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미관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 29B형은 세대통합관리반(전기분전함, 통신단자함)은 거실 벽면에 설치되며, 그에 따른 미관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낙하의 우려가 있으므로 필히 벽체구조를 확인하고 견고한 방법으로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벽걸이 TV 설치 시 전문업체가 설치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내 목재문, 가구 인테리어시트는 자재특성상 색감 및 문양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또한, 세대내 목문틀, 아트월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이며 하자 사항이 아닙니다.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는 단위세대 평면계획에 따라 타입별로 설치위치와 디자인 및 내부 수납기능이 상이 하며, 주방가구 싱크대 하부장 내부 및 레인지후드 상부장에는 각종 장비로 인하여 공간이 협소합니다.
-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제품 일체)은 제품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신청 및 입주 전 설치 가능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설치 불가에 따른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전용 44㎡ 타입은 발코니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공간이 부족하여 세탁기 용량은 10kg 이하만 가능하므로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책상 및 침대 등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설치했으며, 위치 및 조명 기구 변경은 불가합니다.
-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 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 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곰팡이 발생 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는 단위세대 평면계획에 따라 선홍통 설치되거나 세탁기 설치공간으로 사용되므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하며, 미관 저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또는 결빙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발코니 내 경량칸막이는 화재시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화재시 즉시 대피가 가능하도록 어떠한 적재물도 없이 유지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 빨래건조대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자가 개별 설치 시 천장에 각종 매립배관이 위치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향후 미거주시 원상태로 복원하여야 합니다. • 입주 후 세대내 환기가 부족할 경우 내/외부의 온도차이 및 습기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결로에 의한 곰팡이 발생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키셔야 하며 특히 입주 후 첫째 겨울은 환기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욕실 샤워기 및 다량의 온수 사용 시 욕실 환기를 하셔야 하며, 욕실 환기 미비, 거실, 주방 등에 과도한 가습기 사용이나 음식물 조리 및 다량의 화분(실내 또는 발코니)은 결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가습적 사용을 자제하시기 바라며 환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열공사 외 환기불량, 사용상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로에 대해서 우리공사의 책임이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에 인접한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최상층 근접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기계작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19형의 경우 세탁기 및 소형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이는 부산도시공사 소유 자산으로 임의 철거 및 처분 등이 불가합니다. ※ 29A형, 29B형, 44형, 59형의 경우 세탁기와 냉장고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복도에는 선홍통 우수배관 등이 설치되며, 설치위치가 현관문 주위에 있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 복도, 침실 등의 벽체마감(마감두께 등)으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줄어 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와 침실사이 벽체는 내력벽이므로 벽체철거 및 추가 확장공사는 관련법에 의거 불가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세대는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은 추가 설치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더 파크 이기대 행복주택	• 동·호수에 따라 평면이 좌우 대칭되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고려사항으로 사전 고지된 내용이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전에 당해 지구(또는 단지)를 반드시 방문하여 소음·환경저해 등 단지 및 주변 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주변 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조감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쇄 및 편집과정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계실, 비상발전기실, 전기실의 환기를 위한 급·배기용 환기탑(DRY AREA)이 일부 동주변에 설치되어 소음, 냄새 및 비상발전기 운전 시 발생하는 매연 등에 의해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가로등, 자전거보관소, 재활용품보관소, 옥외 쓰레기함 등이 주변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되어 있어 이로 인한 냄새, 미관저해, 소음, 매연, 진동, 불빛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동 옥상 출입문에는 비상개폐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평상시에는 폐쇄되어 있으나 화재 시 개방됩니다. • 방범용 CCTV는 주차장, 1층 승강기 홀, 승강기 내부, 1층 계단실, 쓰레기수거장, 단지출입구, 어린이 놀이터, 1층 공동현관 주출입구, 2층 연결통로, 옥상출입구, 자전거보관소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이동통신 서비스용 중계기 시설은 이동통신사업자 소관사항으로 입주 시 설치되지 않아 휴대전화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시설물은 입주 후 입주자와 이동통신사간 협의를 통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관리사무소 및 주민공동시설 보행로, 야외 운동시설, 소방도로, 보행가로변 등에 인접한 세대는 사생활 침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의 경우 주통행도로, 인근산책로, 부대시설 이용 등으로 인하여 차량전조등, 보안등, CCTV 및 소음 등으로 인한 사생활권 및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주차장 입구에 설치되는 차량출차 주의등과 주차장내 경보등에 인접한 일부 동은 경보음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호수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비상발전기, 각종기계, 환기, 공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별 배치에 따라 같은 방향이라도 층에 따라 일조량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동의 저층부 일부 세대는 공용재산인 조경용 수목으로 인한 조망권, 일조권 침해 및 가로등 설치로 인한 세대내부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부분 계단실 등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비난방 구역이므로 발코니에 설치된 개별 보일러, 수전류, 배수관, 트랩(Trap) 등이 겨울철에는 동결 또는 동파 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입주 시 구조체가 축열되어 있지 않고 공가세대 등으로 인한 열손실로 난방효과가 적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공동생활 건축물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퇴거 시 세대 전용부분 시설물의 파손·고장 등을 원상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계약 전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세대의 경우 단지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삿짐 운반 시 승강기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저층세대의 경우 차로, 보행로 및 인근산책로, 기타 부대시설 등에서 실내가 투시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인생후반전지원센터)의 외부에 설치되는 실외기로 인하여 주변 동에 소음이 전달될 수 있으며, 미관 저해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도시가스(LNG)가 공급되며, 가스용도는 난방용 입니다.
- 발코니에 상부세대 배수배관이 시공되어 배수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은 주차장, 관리사무소, 승강기, 경비실, 용역원실, 자전거보관소, 지하저수조,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방재실, MDF실,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 쓰레기 수거시설 등이 있습니다.
- 단지 내 복리시설은 주민운동시설(옥외), 공유오피스, 어린이놀이터 등이 있습니다.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3미터입니다.
- 계약 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조경(수목의 수종·규격, 시설물, 포장 등), 저층부 외벽마감, 동현관 출입구, 건축 및 토목용벽 등 공용부분은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인하여 입주 후 중량물 거치 시 낙하의 우려가 있으므로 필히 벽체구조를 확인하여 견고한 방법으로 고정하시기 바라며, 특히 벽걸이 TV 설치 시에는 전문업체가 설치토록 하십시오. 다만 퇴거 시에 타공의 경우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 101동과 102동 사이에 일방통행인 일반도로(폭6m)가 있고, 지상2층에 101동과 102동을 연결하는 연결통로가 있습니다.
- 미관 증진을 위하여 설계·시공된 외벽 돌출세대[102동 3~11층 3호라인 9세대]의 발코니 밖 돌출부 공간은 출입 및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므로 발코니 밖 돌출부 출입 및 물건 적치 등 사용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 단지 내 모든 공용시설(공유오피스, 관리사무소, 경비실, 방재실, 기전실 등)은 101동 사택 입주자를 포함한 인생후반전지원센터, 근린생활시설 입주자와 공동사용 합니다.
- 아파트 계약면적 외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혹한기 시설물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 각종 배관에 설치된 열선으로 인하여 겨울철 공용전기료가 증가 할 수 있습니다.
- 옥외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세대 내부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거실 및 침실내부로 물넘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입니다.
-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제품 일체)은 제품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에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신청 및 입주 전 설치 가능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설치불가에 따른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 부산도시공사는 본 주택건설사업 대상지(부산시 남구 용호동 23번지와 87-4번지)의 토지소유자 부산광역시시장으로부터 50년간 무상사용 허가를 받았으며, 본 주택건설사업 사용승인 후 건축물의

	소유권을 달리하는 각 시설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세대는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은 추가 설치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 부산도시공사의 소유인 행복주택 : 102동 68세대(지상2층~지상13층) • 부산시의 소유인 환경공단사택 : 101동 20세대(지상6층~지상10층) • 남구의 소유인 노유자시설(인생후반전지원센터) : 101동 1,587.8㎡(지상1층~지상5층) • 부산도시공사와 남구의 소유인 근린생활시설 : 101동 92.3㎡(1지상1층, 2개소)
동래행복주택	• 단지주변 도로, 상업시설 등으로 인해 소음 및 기타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보행자 통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반경 2km 내에 안민초등학교, 안진초등학교, 안락중학교, 남일중학교, 동래고등학교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본 지구의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서측에는 수민동 행정복지센터, 남서측에는 동래세무서, 북동쪽에는 동래보생병원, 남측에는 온천천 시민공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단지 북서측에는 동래역(동해선)이 위치해있으며 이로 인해 철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단지배치도, 조감도, 단위세대 평면도, 각종 이미지컷 등의 자료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101동 1층에는 사회복지관, 작은도서관, 사회적기업, 2층에는 경로당, 주민카페(코인세탁방 설치), 관리사무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101동 좌측 건물에는 근린생활시설(6개 분양) 및 어린이집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인접한 세대들은 이용자들로 인해 소음 등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사회복지관, 작은도서관, 사회적기업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의거 동래구청에 무상임대하여 운영합니다. • 주차대수는 총 188대(지상186대, 상가2대)로 상가주차는 주차위치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3.0m입니다. • 단지 및 주변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 아파트 배치구조 또는 동·호수별 위치 및 인근 아파트 단지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전 사업부지 현장 및 부지인근 방문을 통하여 주변시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의 보안등, 가로등과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음, 차량 진출입에 따른 경보음 및 전조등으로 인해 저층 세대에서는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야외시설(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시설이용에 따른 소음 등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각종기계, 환기설비 등의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쓰레기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어 2층을 포함한 저층세대는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해충과 수거 차량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체결 전 반드시 위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옥외쓰레기수거함, 자전거 보관소, 어린이 놀이터, 옥외운동시설 등의 동별 이동거리가 상이하여 불편을 느낄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전 반드시 위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세대 내 주방용 환기덕트가 세대 천정 속에 설치되어 주방후드 가동 시 진동,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범죄예방을 위한 단지내 CCTV설비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 등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카메라에 의해 조망되지 않는 구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102동 및 103동 옆에 인접한 철도(동해선)의 소음, 진동으로 인하여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102동 1층에는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102동 1층에는 전기실, 비상발전기실 및 발전기 급·배기구가 설치되어 소음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비상발전기 가동시 소음, 진동,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2동 405호 및 406호, 103동 303호 및 304호의 경우 세대 내 천정에 P트랩 점검구가 설치되어 있으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가스보일러)를 이용하여 바닥난방 및 온수로 공급하며, 29형 이하의 세대는 온도

- 조절장치가, 32형 이상의 세대는 실별온도조절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32형 이상의 세대는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할 수 있으며, 난방 가동시 온수분배기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냉방기는 벽걸이형으로 세대당 1대가 설치되고, 실외기가 발코니에 설치되어 있어, 에어컨 가동 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발코니 실내 온도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공요금(수도, 가스, 전기)은 원격검침 방식입니다.
 - 세대 내에 가스쿡탑이 설치되어 있으나, 연결은 별도로 (주)부산도시가스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일부세대의 경우 세탁수전이 좌핸들 타입으로 설치되므로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세대의 경우 현관 천정부위 및 신발장 쪽에 PD 점검구가 설치되오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 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25,29,36형의 식탁용 조명기구(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위치를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19,32,32A1,36C형 단위세대에는 식탁용 조명기구 미설치))
 - 냉장고 콘센트는 보편적으로 냉장고가 놓일 것으로 예상하여 위치를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세대 내 전기분전반 및 통신단자함이 신발장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세대가 있습니다.
 - 단지 내 시설물 마감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입주자 의견 및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시설물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중대한 변경사유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밟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 면적(발코니 등)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 시 임대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단지 여건상 사다리차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사를 하셔야 합니다.
 - 101동 옥상에는 입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태양광발전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101동 옥탑에 TV시청을 위한 공시청·위성 안테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각 동 옥탑에 피뢰침이 설치되어 있으며, 일부 동, 일부 층은 외벽에 축뢰용 피뢰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내부에는 환기 팬이 설치되어 있으며, 냉방장치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 103동은 1대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점검 등으로 인하여 운행정지 시 엘리베이터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대형 가전제품은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세대 내부 규모를 확인하여 구매 및 이사하시기 바라며, 설치 불가로 인한 사업주체 책임이 없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설치된 가전제품 외 제품을 사용하시더라도 가전제품의 철거 등은 불가능하며, 입주시 설치된 가전제품은 입주자가 관리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표현된 각 주택형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안목치수가 아닌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피난구(하향식피난구 또는 경량칸막이벽체)는 각 동별 4층이상 세대 발코니에 설치되며, 102동 1705호는 아파트 구조상 발코니 외부에 하향식피난구가 설치됩니다.
 - 발코니에 설치된 피난구는 화재시 비상 대피통로이므로 입주자 임의로 개조 및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세대내 타일, 마루, 주방상판 및 목재문, 가구 등의 시트지는 재료특성상 색감 및 문양이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목문틀,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본 단지의 일부마감재는 중소기업제품으로 시공되었습니다.
※ 해당품목 : 주방가구, 일반가구(신발장, 드레스룸장), 창호류(합성수지제창, 합성수지제문, 목재문), 도·자기질타일, 조명기구, CCTV, 승강기 등
 - 세대내 가구(주방가구, 불박이장, 신발장 등)설치 부위의 벽체 및 바닥에는 시공 선후관계상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세대는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은 추가 설치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시청 앞
행복주택
2단지

- 아파트는 지하4층~지상37층 규모로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조명, 소음 및 매연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단지 내 보행자로 인한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주차장은 806대(오피스텔 57대, 상가 17대, 지역편의시설 35대 포함)로 모두 지하주차장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상가주차는 주차위치가 지정되어있고, 단지 배치상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 않습니다.
- 아파트 외벽 부위는 도장으로 시공되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과 인접한 부분은 일부 보행자 동선과 중첩될 수 있으며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차량출입구는 1개소 설치되었으며, 201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경비실은 1개소 설치되었으며, 201동 차량출입구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단지내 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동별-라인별로 진입이 불가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지하주차장은 배수 및 환기시설이 있으나 기후여건에 따라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지하주차장 배수트렌치는 구배가 없으며 시공허용 오차로 인해 일부구간에서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 공동이 사용하는 야외 시설물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의 영향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주동 주변에 쓰레기분리수거장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급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 지역편의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에 인접한 라인은 소음 발생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 표고차이 및 주변 건물로 인해 일부 세대의 경우 조망 등 기타 생활환경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세대별로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필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실, 발전기실에 인접한 동은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한 소음, 진동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전기실 및 발전기실 DA는 보도 및 녹지에 인접하여 있습니다.
- 옥상에는 TV공청안테나가 설치됩니다.
- 중복도식 구조로 복도창호가 설치되며 일부 배연창이 설치되어 환기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옥상에는 태양광 발전설비 관련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단지 내 가스공급을 위한 지상 정압기실 설치에 따른 미관 저해 및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역편의시설은 연제구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지역주민에 개방되며,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 행복주택단지가 부산1호선(시청역)과 인접해 있습니다.
- 세대 내 가구(주방가구, 불박이장, 신발장 등) 설치 부위의 벽체 및 바닥에는 시공 선후관계상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현관, 발코니, 욕실 등 바닥 단차부위는 시공과정상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PD점검구는 욕실천장 및 가구류 내부 또는 PD 인접실 등에 설치되며 설치위치 및 형태에 따라 마감 노출로 인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 세대통합관리반(분전함 및 통신단자함)은 신발장(안쪽) 또는 거실 벽면에 설치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미관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낙하의 우려가 있으므로 필히 벽체구조를 확인하고 견고한 방법으로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벽걸이 TV 설치 시 전문업체가 설치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내 목재문, 가구 인테리어시트는 자재특성상 색감 및 문양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또한, 세대 내 목문틀, 아트월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이며 하자 사항이 아닙니다.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는 단위세대 평면계획에 따라 타입별로 설치위치와 디자인 및 내부 수납기능이 상이하며, 주방가구 싱크대 하부장 내부 및 레인지후드 상부장에는 각종 장비로 인하여 공간이 협소합니다.
-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제품 일체)은 제품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신청 및 입주 전 설치 가능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설치 불가에 따른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보편적으로 책상 및 침대 등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설치 예정이며, 위치 및 조명기구 변경은 불가합니다).
-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 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곰팡이 발생 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는 단위세대 평면계획에 따라 선호통 설치되거나 세탁기 설치공간으로 사용되므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하며, 미관 저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또는 결빙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발코니 내 경량칸막이는 화재시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화재시 즉시 대피가 가능하도록 어떠한 적재물도 없이 유지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 빨래건조대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자가 개별 설치 시 천장에 각종 매립배관이 위치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향후 미거주시 원상태로 복원하여야 합니다.
- 입주 후 세대내 환기가 부족할 경우 내/외부의 온도차이 및 습기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결로에 의한 곰팡이 발생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키셔야 하며 특히 입주 후 첫해 겨울은 환기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욕실 샤워기 및 다량의 온수 사용 시 욕실 환기를 하셔야 하며, 욕실 환기 미실시, 거실, 주방 등에 과도한 가습기 사용이나 음식물 조리 및 다량의 화분(실내 또는 발코니)은 결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시기 바라며 환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열공사 외 환기불량, 사용상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로에 대해서 우리공사의 책임이 없습니다.
- 각종 조감도, 단위세대 평면도, 마감재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함은 각 주동 주변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에 인접한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최상층 근접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기계작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단지배치도, 동호배치도 상 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복도에는 방화문이 설치되며, 설치위치가 현관문 주위에 있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 201동 44A 타입, 202동 36B 타입 일부세대에는 대피공간에 소방대진입창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소방대진입창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 표시가 있습니다.
- 복도, 침실 등의 벽체마감(마감두께 등)으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줄어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와 침실사이 벽체는 내력벽이므로 벽체철거 및 추가 확장공사는 관련법에 의거 불가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세대는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은 추가 설치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경동포레스트힐 행복주택 아미, 금호센트럴베이 행복주택 일광, 금사행복주택, 시청앞 행복주택 2단지)

성능부문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등
단열조치 준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조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 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준수
방습층 설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4호에 의한 방습층을 설치
고효율기자재	적용	- 가정용보일러 :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 - 전동기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 만족 - 급수펌프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대기전력 차단장치	적용	- 거실, 침실, 주방에 대기전력자동콘센트 또는 대기전력차단스위치를 각 개소에 1개 이상 설치
고효율 조명기구	적용	- 세대/공용부위 : 고효율조명기구 또는 LED 조명기구를 설치
실별온도 조절장치	적용	- 세대 각 실 : 실내온도조절기 설치
절수 설비	적용	- 세대 내 수전류 : 절수형 설비 설치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더 파크 이기대)

성능부문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등
고효율기자재	적용	- 가정용보일러 :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 - 전동기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 만족 - 급수펌프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대기전력 차단장치	적용	- 거실, 침실, 주방에 대기전력자동콘센트 또는 대기전력차단스위치를 각 개소에 1개 이상 설치
고효율 조명기구	적용	- 세대/공용부위 : 고효율조명기구 또는 LED 조명기구를 설치
실별온도 조절장치	적용	- 세대 각 실 : 실내온도조절기 설치
절수 설비	적용	- 세대 내 수전류 : 절수형 설비 설치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동래행복주택)

성능부문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등
고기밀창호	적용	KS F2992 창호의 기밀성시험방법에 의한 성능 2등급 이상
고효율기자재	적용	변압기 및 전동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사용
대기전력 차단장치	적용	거실, 침실, 주방에 대기전력차단콘센트 각 개소에 1개 이상 설치
고효율 조명기구	적용	세대 내 및 공용부위 조명기구 고효율 기자재 및 동등성능 이상 제품 적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시설 화장실 내 자동점멸 스위치 설치
실별온도 조절장치	적용	각 실별 자동온도 조절장치 설치
절수 설비	적용	세대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 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 1조의 2, 별표 2에 따른 절수 설비 설치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고령자(주거약자용) 주택에 설치하는 편의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소	편의시설
현관	동작 감지 센서등, 마루귀틀 높이 3cm 이하, 안전손잡이 설치
거실	비상연락장치, 동체감지기, 조명 밝기 600 ~ 900룩스(lux)
욕실	위·아래 이동가능 샤워기(슬라이딩 바로 적용), 동작 감지 센서등, 비상연락장치, 안전손잡이 설치, 출입문 밖여닫이
발코니	동체감지기
부엌	좌식 싱크대 설치, 취사용 가스밸브를 바닥면에서 1.2m 높이 내외로 설치
침실	조명 밝기 300 ~ 400룩스(lux)

신청관련 문의	- 문의처 : 051-810-9905~9910 ※ 운영시간 평일 10~16시, 토·일·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공고문 :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bmc.busan.kr), BMC청약센터(https://apply.bmc.busan.kr) - 상담관련 유의사항 - 부산도시공사는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화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한 정보나 상황에 대한 자료 없이 진행되오니 상담 정보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발표	○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bmc.busan.kr), BMC청약센터(https://apply.bmc.busan.kr)
현장접수처 약도	
도로명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부전동), 부산도시공사

- 부산도시공사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公社 홈페이지(www.bmc.busan.kr) 「고객만족센터-익명신고」에 제보 및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유형

- | | | |
|------------------|----------------|------------------------|
| 1.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행위 | 2. 부당이득 수수행위 | 3. 정보보안관련 위반행위 |
| 4. 건전한 조직문화 저해행위 | 5. 개선건의 및 직원칭찬 | 6. 비윤리 행위, 갑질행위 및 인권침해 |
| 7. 공정거래 저해 행위 | |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2026. 7.20

부산도시공사 사장